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조직 법적 근거 마련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 조사 진행 및 폭행·협박·명예훼손 발생 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 규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현재 2개 시도 (서울, 경기)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을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담 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개요

담당 부서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책임자	과 장	연수진 (044-203-7151)
		담당자	사무관	전상희 (044-203-7166)

##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통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 등이 제기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27. ~ 2026. 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의12를 제20조의13으로 하고, 제2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

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를 “법률 제21228호 영유아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를 “영유아특별회계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제20조의12 (생략)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  
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20조의13 (현행 제20조의12와  
같음)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  
-----  
-----  
-----  
-----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 ④ (생략)

-----  
 -----  
 ----- 법률 제21228호 영유아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

----- 영유아특별회계에서 -----.

② ~ ④ (현행과 같음)

**□ 개 요**

- (목적) 보육활동 침해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서·심리 및 전문적 상담 지원을 통한 포괄적 회복 지원
- (운영 내용)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피해 보육교직원의 회복 지원

- |                        |                               |
|------------------------|-------------------------------|
| ① 보육활동 침해 예방 사업 운영     | ② 업무 담당자(중앙)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
| ③ 침해 교직원 대상 치유 및 복귀 지원 | ④ 교직원(개인/집단) 대상 일반 심리상담       |
| ⑤ 보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 ⑥ 보육활동 보호문화조성 콘텐츠 제작·보급 등     |

- (운영 방법) 중앙-시도 단위의 육아종합센터 내 전담조직 설치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제12조제2항 신설)에 따라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서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

**□ 현 황**

- (중앙) 중앙육아종합센터(한국보육진흥원) 내 중앙보육활동보호센터 (‘26. 현재 운영 중)를 두고, 시도 공동·공동 사업 추진
- (시도) 시도육아종합센터 내 지역보육활동보호센터를 두고, 관할 어린이집 지원
  - ※ (‘26~’27) 서울(1곳)·경기(1곳) 운영 중, 광역 단위 확대 → (‘27~) 기초단위 설치 추진

## □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현황(`26.2.기준)

### ①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마음성장프로젝트')

-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마음성장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실시 → 맞춤형 교육 제공
  - 영유아교사 마음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대면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 \* 힐링스테이(1박2일), 힐링열차(당일) 등
- ▶ (심리건강 검사도구) 보육교직원 맞춤형 심리건강 검사도구('마음UP') 운영
  - 심리건강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마음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 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보육교직원 상담 연계
    - ※ 상담 매뉴얼 제작, 상담 전문요원 교육 등
  - '마음UP' 검사 플랫폼 정보 보안 강화 등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 (보육활동보호센터 시범운영) 보육활동 침해행위 상담 및 지원
  - ※ 상담 지원(법률·심리·현장 지원) 54건 ('24.8. ~ '25.12.)

### ② 보육교직원 상담 사업

- ▶ (운영) 80개소(중앙 1개소, 시도 센터 18개소, 시군구 센터 61개소)
- ▶ (중앙센터) 보육교직원 상담사업 총괄, 상담전문요원 교육, 홍보 등
- ▶ (지역센터) 상담전문요원 운용, 개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25년 보육교직원 상담 내용별 현황(단위: 건, %)>

계	진로고민	원아와의 상호작용	업무 관련	동료·상사 관계	학부모 관련	경제적 안정	개인사 관련	심리·적성·성격검사	이동학대 예방	기타
24,418 (100.0)	281 (1.2)	1,611 (7.2)	1,960 (8.0)	3,983 (16.3)	674 (2.8)	55 (0.2)	1,859 (7.6)	10,230 (41.9)	1,282 (5.3)	2,483 (10.2)